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체계화〉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21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1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1). 정의조항	1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8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0
(4). 실태조사	23
(5). 지원신청 등	24
(6). 직업훈련 및 보호자 지원	25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26
(8).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
(9). 보칙	31
(10). 벌칙	33
(11). 부칙	33
[참고자료]	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7.
3. 회부연월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함. 이들은 학습이나 사회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센터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IV.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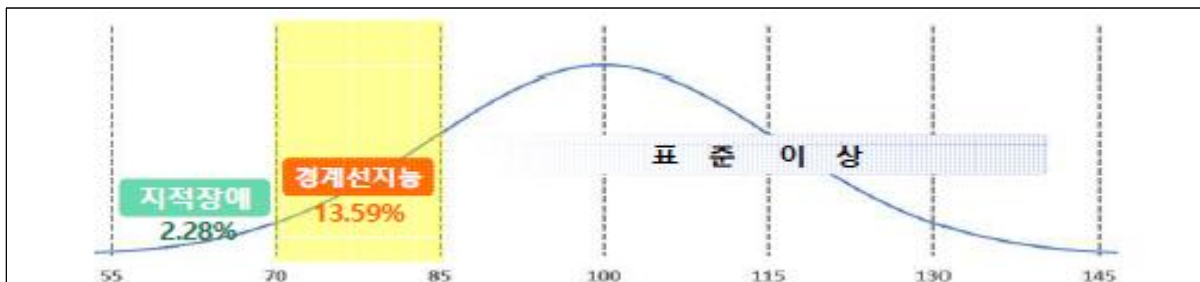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제안 배경과 입법필요성

(1) 경계선지능인 및 관련 규정 현황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71-84)¹⁾으로 인식되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는 부재한 상황임. 현재 국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 국민 대상의 실태조사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상 전체 인구의 약 14%로 약 697만명²⁾으로 추정되고 있음³⁾.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 1)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 기준
- 2) 우리나라 총 인구 수(5,129만 명/’24.3.통계청) 대비 환산 시 약 697만명 규모이며, 초·중·고 학생 수(576만명/’23.교육기본통계) 기준 약 78만명
- 3) 2023년 교육부가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초·중·고 학생 35만 6천여 명 중 4.6%에 해당하는 16,400명 가량이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석됨.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⁴⁾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경계선지능 아동은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이나 사기 등의 범죄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전 생애주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한 상황임.⁵⁾

□ 현재 명시적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2016년 「초·중등교육법」 제28조⁶⁾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5) SBS NEWS(2025.8.21.) “경계선지능 동창 피어 컨테이너 살게 하고 대출 강요해 착취”, 경향신문(2025.8.20.) ““경계선 지능 동창생 임금 떼먹고 대출금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에이블뉴스(2025.8.19.)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계선 지능 여성의 현실,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경계”

경향신문(2023.4.17.)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찌나”

한겨레신문(2022.8.15.) “한반에 2~3명 ‘경계선 지능’...조기 진단·개입 시급”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포함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⁷⁾.

또한, 2021년에는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였음.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4439호) 제안이유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발전 속 여전히 학교 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외면되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 학습부진 학생으로 귀결되고 있는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이 바로 그들임. (중략)

이에 학교 통칙 규정에 학습능력향상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학습능력향상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28조).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⁹⁾에 따라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서비스 등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¹⁰⁾, 그 대상이 전체 경계선 지능 아동이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현황¹¹⁾ 등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¹²⁾, 이후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93개¹³⁾ 광역·기초지자체에서(2024년 7월 기준)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¹⁴⁾, 이 중 76%(71개)가 최근 2년 내 제정된 조례임.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전담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관련예산(2024년 기준 24.5억원)을 편성·운영중임.

9)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II」, 2024.2.

11) 참고자료2

12) 서울시는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기도 함.

13) 기초자치단체 66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5곳, 교육청 12곳

14) 54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의 시·도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중.

(2)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바,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 전반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짐.

다만,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하였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히 평생교육 측면만이 아닌 생애주기별 대책¹⁵⁾이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에 국한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제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인 역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동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경계선지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15)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범부처합동)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대책에 단순히 교육의 측면이 아닌 인식개선 및 지역 내 협력체계 조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 등 소관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현재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의원	소관
137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교육위원회
302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	보건복지위
3115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보건복지위
329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	보건복지위
466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보건복지위
789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보건복지위
8004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	보건복지위
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보건복지위
12721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	교육위원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경우 2025년 12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전국 17개 시·도에 적용하면 매년 약 218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측되므로 재정적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개소,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센터운영비(A)	1,283	1,309	1,335	1,362	1,389	6,678	1,336
센터 수(B)	17	17	17	17	17	-	-
추가재정소요(A×B)	218	222	227	231	236	1,135	2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1: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시·도별 센터 규모 및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주2: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3) 관계기관 의견 및 해외 입법례

□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를 이원화하기보다는 기존 「평생교육법」 체계 내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법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참고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¹⁶⁾,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조기진단·교육·직업 활동 등 전반적인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

16) 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6.

며, 일본은 교육, 독일은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2024년 행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문제발굴·진단,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일본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은 통상의 학급에서 실시하면서 장애에 따른 특별지도를 통급지도교실에서 실시하는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인으로, 지적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학습장애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지지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하며, 학습장애인의 지도시간은 연간 10시간~28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재구성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2024년 7월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제정안과 조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홍기원 의원안	조승환 의원안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	-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제6조	실태조사	실태조사(안 제7조)
제7조	평생교육 지원 신청 등	지원신청 등(안 제8조)
제8조	직업훈련 지원	-
제9조	보호자 지원	-
제10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안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
제12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3장	보칙	-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
제14조	지도와 감독	-
제15조	보고와 검사	-
제16조	위임·위탁	-
제4장	벌칙	-
제17조	벌칙	-
제18조	과태료	-
부칙		

□ 제정안은 총 4장 18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으로서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제3장은 경계선지능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함.
- 제4장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료제출·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규정함.

□ 이하에서는 주요 조문별로 입법 효과와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제정안의 구성]

구 분	세부 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7조(평생교육 지원 신청 등), 제8조(직업훈련 지원) 제9조(보호자 지원), 제10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제11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제12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장 보 칙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지도와 감독), 제15조(보고와 검사), 제16조(위임·위탁)
제4장 벌 칙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부 칙	시행일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조항(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홍기원 의원안	조승환 의원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의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제출된 법률안과 서울특별시 등의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 취지 제21대 국회 발의안 정의규정 비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아동”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정의규정>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지적장애인 외에 자폐성장장애인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다수 조례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함에 있어 지적장애인만을 배제하여 자폐성장장애인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제정안의 경우 발달장애인 전체를 경계선지능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예컨대, 현재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지적장애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자폐성장장애인은 포함될 수 있어 제정안과 같이 경계선지능인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⁷⁾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던 자폐성장장애인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등 정책적 혼란을 빚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¹⁸⁾ 중에서도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

18)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

한 법률」에 의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이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22대 발의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안」¹⁹⁾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의 적용대상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국제기준에 따라 IQ 71~84²⁰⁾에 해당하는 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보고 있으나, 지능지수 이외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계선지능인의 범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 독자적인 지능검사 시험을 신설하여 한국의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경계선지능인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범주에 따른 지원대상의 규모 및 지원대상 간 인지능력의 편차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제정안이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19)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이 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임

20) DSM-IV-TR(2000)은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을 IQ 71~84 범주로 기술(V62.89)하였으나, DSM-5(2013)는 지능장애 진단에서 IQ 절대 경계값을 폐지하고 적응기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BIF의 명확한 진단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 진단 기준도 부재

것은 기술적인 영역인 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에는 하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수의 법률이 발의된 상황에서 대통령령에서 개념을 정의할 경우 개별 법령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²¹⁾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개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제4조)

홍기원 의원안	조승환 의원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제2조) 및 지원근거(제9조, 제30조, 제32조의6, 제39조 등)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정책추진 및 분야별 법이 제정되고 있음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정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평생교육법」이 제5조²²⁾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소관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가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게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도 「평생교육법」에서 보장하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22)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개의 개별 법률 등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이 「평생교육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의 경우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정안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법 조항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5조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9조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²³⁾ 제7조는 장애인평생교

2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6364), 진선미의원, 현재 전체회의 의결이 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임.

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0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과는 별개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평생교육 일반에 대하여 수립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생교육 지원체계 간 연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평생교육 대상자는 고령 비문해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하여 대상자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수립은 자칫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4) 실태조사(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식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2024년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²⁴⁾하고 있음. 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순히 교육분야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영역(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나 그 적절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년 9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 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5) 지원신청 등(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평생교육 지원 신청 등) ①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7조는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제정안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범위 및 정의가 모호하여 이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불확실하므로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신청 시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를 받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6) 직업훈련 및 보호자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경계선지능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 정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에게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와 양육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 등의 문제로 정규교육을 마치더라도 직업을 가지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지도 및 직업 적응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역시 경계선지능인을 양육함에 있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에 따른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훈련과정 설계, 진로 컨설팅 등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4조는 장애인의 고용·복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수행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3.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 양성
- 9. 제3항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원
- 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
- 4.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6. 경계선지능인의 직업훈련 지원
- 7.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0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달체계 관련 사항을 기존 발의된 법률안과 비교하면, 교육위원회 계류중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 제9조25)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

2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의안번호1376) 제9조 ①시·도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지원센터와 지역별로 설치하는 지역지원센터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점이 있음.

한편, 현행 「평생교육법」 제19조는 국가 단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평생교육학습센터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²⁶⁾역시 「평생교육법」 체계에 맞추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이하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체계에 맞춰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수행에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별 평생교육학습센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역시 설치·운영될 예정이므로 예산·인력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반 평생교육 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의안번호6364)

- 참고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평생교육학습센터와 시·군·구평생교육학습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전달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기 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광주시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설립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도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센터 설치·운영은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임.

(8)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2조)

제 정 안
제11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1조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가 안 제11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안 제11조는 관계기관의 연계·협력 체계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안 제12조는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 제6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통계치와 같은 정보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

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평생교육법」 제18조의2²⁷⁾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 보다는 예산·인력 면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보칙(안 제13조 ~ 제16조)

제 정 안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도와 감독)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 「평생교육법」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3조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5조는 안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안 제13조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제정안을 통해 지원 받는 경계선지능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²⁸⁾는 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낙인 또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제정안 제13조 역시 동 제정안을 통해 지원받는 경계선지능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28)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벌칙(안 제17조 및 제18조)

제 정 안
제17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안 제17조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11)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안 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입법경과를 보면, 시행령 및 부령 제정 기간, 지역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수정의결한 바, 제정안 시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93

참고 1

과제별 소관기관

구분			주요 과제	소관기관
발굴강화 및 실태파악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감지	부모 대상 정보 제공	교육부
		발견	학령기 조기발견 체계 구축	교육부
		진단	경계선지능인 검사도구 개발	교육부 등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영유아기)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지원서비스 등 안내 강화	교육부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여가부 교육부
	(학령기) 학업 단계별 맞춤형 학습·상담·진로 지원		조기발견·정보연계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부
			마음건강 지원(Wee 프로젝트)	교육부
			3단계 안전망 등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부
			직업교육위탁교육과정 등 진로·직업 교육 지원	교육부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부
			자조모임 등 학부모 지원	지자체 등
			법교육 지원	법무부 교육부
			학교 밖 경계성지능인 지원	여가부 교육부
			취약아동 지원	복지부
	(성인기)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자체 등
			당사자·가족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공통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인식개선 노력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공통 지자체
	지역 내 협력체계 조성		생활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공통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	공통 지자체

자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범부처 합동

참고 2

경계선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현황

지역	광역자치단체 조례	시도교육청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
서울	○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17)
부산	○	○	강서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5)
대구	○	○	동구, 수성구(2)
인천	○	○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4)
광주	○	○	남구(1)
대전	○		대덕구, 동구, 유성구(3)
울산	○	○	동구, 중구(2)
세종	○	○	
경기	○	○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19)
강원	○	○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3)
충북	○	○	충주시(1)
충남	○	○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7)
전북	○		
전남			무안군, 여수시(2)
경북	○		
경남			
제주	○	○	

자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법무처 합동